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93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김성원·김선교·고동진
박성훈·유용원·조정훈
김대식·서명옥·이현승
김미애·윤용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의료·요양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간호조무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700시간)을 이수한 경우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지역 돌봄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인력임.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그 역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서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보건의료)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군에서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u>간호서비스</u>
<u>3. ~ 8.</u> (생 략)	<u>4. ~ 9.</u>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